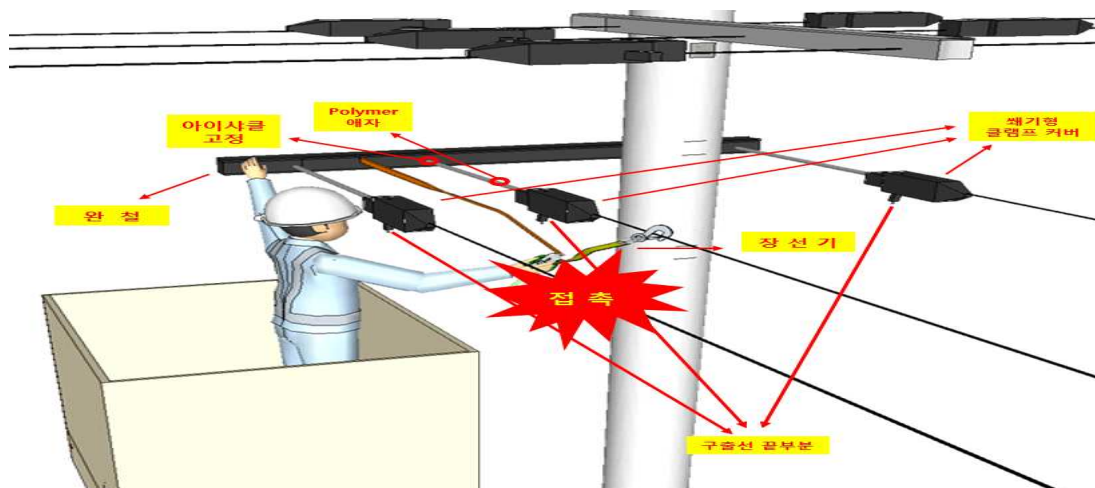




재해 개요

- 2018. 3. 27(화) 경북 고령군 소재 태양광발전소 신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절연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전선이설 작업 중 22.9KV 전선의 노출된 충전부(인장클램프 보호커버 구출선)와 활선용 장선기의 금속부분에 접촉되면서 감전으로 인한 화상으로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안전조치 미흡
 -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미설치함
- 인장 클램프 보호커버 구출선 노출부위 처리방법 부적절
 - 인장 클램프 보호커버 구출선 노출부가 별도의 보호조치 없는 상태로 방치하여 작업시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 발생 위험 존재



재해 예방 대책

-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안전조치 실시
 -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 덮개 등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
 -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실시
- 인장 클램프 보호커버 구출선 노출부에는 보호 캡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작업시 불시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 방지

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